

제 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0.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0월 24일
전문위원 권 오 숙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116
- 나. 발 의 자: 최세진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2023년 10월 13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2. 제안이유

근거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충전시설 설치 촉진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4조제2항제3호)
- 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근거법에 따라 규정함(안 제6조)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 다. 해당부서: 녹색환경과
-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0. 16. ~ 10. 2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정의) 및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음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안 제6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 제6조제1항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의 제1항¹⁾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

- 제6조제2항은 법 제11조의2의 제6항²⁾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

- 제6조제3항은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법 제11조의3의 제1항³⁾ 규정을 반영하였고,

1)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제11조의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3)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6조제4항은 법 제11조의3의 제2항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했으며,
 - 제6조제5항은 법 제11조의3의 제5항5)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는 법 제11조6)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음

4)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제11조의3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6)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지속적인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비해 이용자 관점에서는 충전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규정과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 충전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률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현황 (2023. 9. 30. 기준)

| 합계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자동차 |
|--------|-------|-----------|-------|
| 16,184 | 3,426 | 12,505 | 253 |

-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2023. 9. 30. 기준)

| 합계 | 전기자동차 충전소(급·완속) | | | | 수소충전소 |
|-------|-----------------|------|--------------------|----------|-------|
| | 소계 | 공공시설 | 민간시설 (아파트 등 제외) | 아파트 등 주택 | |
| 2,531 | 2,528 | 238 | 650 | 1,640 | 3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 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③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

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제목개정 2021. 7. 27.]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